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3.4.)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u>23시 운영시간 제한</u>
	∘ 대상시설(13 종)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업 ▲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 관공 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u>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u>
	시→ 에시로 연장

-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 적용은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

- 가. 적용기간: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방역패스 중단에 따른 밀집도 기준 변경, 세부 수칙 조정은 <붙임> 참조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나 단, <u>2021.12.16. 0시 이전</u>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방역대책



생활방역팀장 **권민정**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주무관 행정사무관 안웅식 홍명기 코로나바이러 2022.3.4. 코로나바이러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스감염증-19 스감염증-19중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이기일** 중앙사고수습 **류근혁** 앙사고수습본 권덕철 본부 부본부장 부 본부장 과

협조자

지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수 학생건강정책과-1947 (2022. 3. 4.) 중앙사고수습본부-9813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mk7069@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